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 검 토 보 고 서

2024. 3. 13.

자치행정위원회

#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정현미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 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고, 전수교육시설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무형유산의 보전·전승 및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제8조, 제14조~제15조)
  - 제명 변경 :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남양주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국가유산체제에 맞게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
- 나. 전수교육시설 마련 규정 신설(안 제6조)
- 다. 지원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근거 조항 명시(안 제14조제1호)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문화관광과
- 라. 입법예고 : 2024. 3. 7. ~ 3. 12.(6일간)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3년에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오는 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에 맞춰 조례상의 용어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정비하고, 전수교육시설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개정되는 안건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무형유산’ 용어의 조기 정착은 물론 전수교육시설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남양주시의 무형유산인 계명주, 소목장, 퇴계원산대놀이(참고자료 1)가 후대까지 보전·전승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참고자료 1 : 남양주시 무형유산 현황

[표1] 경기도 지정 남양주시 무형유산 현황 [종목 3건, 보유자(단체) 5건] (2023. 5. 기준)

구분	명칭	소재지	주요내용	비고
<b>계명주</b> 	계명주(최옥근) 〈무형유산 1호〉	화도읍 비룡로 110-18, 109동 403호	밤에 술을 담궈, 다음날 새벽닭이 울 때면 먹을 수 있어 ‘계명주’라고 불린다. 전통 민속주로 옥수수, 수수, 엇기름, 누룩, 솔잎 등으로 만든 속성주이다.	87. 02. 12.
	계명주(이창수) 〈전승교육사〉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494번길 8-1(2층)	계명주 제조기능을 가진 장인의 기능 전승교육사 (舊 전수교육조교)	전승교육사 (14. 10. 31.)
	계명주(이창훈) 〈전수장학생〉	서울시 동작구 국사봉10길 57, 101호	계명주 제조기능을 가진 장인의 기능 전수장학생 (21. 8. ~ 26. 8.)	전수장학생 (21. 08. 23.)
<b>소목장</b> 	소목장(권우범) 〈무형유산 14-1호〉	진접읍 주곡로 164-14	소목장(小木匠)이란 건물의 문, 창문이라든가 장롱, 궤, 경대, 책상, 문갑 등 목가구를 제작하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목수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을 주로 하는 대목장(大木匠)에 대칭되는 말이다.	06. 03. 20.
	소목장(안규열) 〈전승교육사〉	(금곡리 571-1, 대권공예)	소목장 제조기능을 가진 장인의 기능 전승교육사 (舊 전수교육조교)	전승교육사 (13. 01. 07.)
	소목장(이샬롬) 〈전수장학생〉		소목장 제조기능을 가진 장인의 기능 전수장학생 (19. 11. ~ 24. 11.)	전수장학생 (19. 11. 05.)
<b>퇴계원 산대놀이</b> 	퇴계원산대놀이 (단체) 〈무형유산 52호〉	경춘로611번길 2	퇴계원산대놀이는 1930년대까지 남양주시 퇴계원(당시 양주)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던 전통민속예술이다. 일제 점령기에 산대놀 이로 인해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므로 일제의 민족탄압정책으로 탈, 의상 등이 사라졌고,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였으나, 근래에 와서 그 뿌리를 찾는 작업이 일어나 현재 12과장에 대한 복원을 완료하여 활발한 전수작업과 공연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10. 08. 02.
	탈 제작 보유자 (김기철) 〈무형유산 52호〉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46, 탈마당		21. 11. 30.
	연희 보유자 (이재훈) 〈무형유산 52호〉	퇴계원읍 경춘북로613번길 15, 102-2301		21. 11. 30.

## ■ 참고자료 2 :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현황

[표2] 경기도 전수교육관 세부 현황 (경기도 19곳)

(2024. 1. 31. 기준)

순번	전수교육관명	입주종목명	구분	종목수	
				예능	기능
1	입사전수관	입사장(시도)	기능	·	1
2	평택농악전수교육관	평택농악(국가)	예능	1	·
3	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	안성남사당풍물놀이(시도)	예능	1	·
4	태평무전수관	태평무(국가)	예능	1	·
5	남한산성소주전수관	남한산성소주(시도)	기능	·	1
6	양주별산대놀이전수교육관	양주별산대놀이(국가)	예능	1	·
7	양주소놀이굿전수교육관	양주소놀이굿(국가)	예능	1	·
8	양주상여회다지소리전수회관	양주상여회다지소리(시도)	예능	1	·
9	군포시방짜유기전수교육관	방짜유기장(시도)	기능	·	1
10	수원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승무·살풀이춤(시도) 단청장(시도)	복합	1	1
11	안성향당무전수관	안성향당무(시도)	예능	1	·
12	파주금산리민요전수회관	파주금산리민요(시도)	예능	1	·
13	경기소리전수회관	경기소리(긴잡가)(시도)	예능	1	·
14	통진두레문화센터	김포통진두레놀이(시도)	예능	1	·
15	갈매동도당굿전수관	갈매동도당굿(시도)	예능	1	·
16	양주농악전수교육관	양주농악(시도)	예능	1	·
17	포천메나리전수교육관	포천메나리(시도)	예능	1	·
18	이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벼루장(시도), 사기장(시도), 목조각장(시도), 이천거북놀이(시도)	복합	1	3
19	젯머리성황제전수회관	젯머리성황제(시도)	예능	1	·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2.~ 8. (생략)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 12. (생략)

제37조(전승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6조(전수교육시설)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금)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 해당 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및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2.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3.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최근 3 년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연평균이 1억원 미만인 53,700천원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연도	구분		합계	비고
	지역예술단체 활동 지원금	경기도 지정문화유산 전승지원금		
2021	20,000	8,400(700×12월)	28,400	퇴계원 산대놀이 단체 기준
2022	32,000	8,400(700×12월)	40,400	
2023	52,000	8,400(700×12월)	60,400	

- 현재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개인종목(계명주, 소목장)은 개인 공방이나 자택에서 전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단체종목(퇴계원산대놀이)은 퇴계원읍 다목적회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 지역 시설을 이용 중임. 따라서 현재 전수교육시설 마련에 대한 재정 수반사항 없음.

#### 4. 작성자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장 이주연